# 「2022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」 공모 안내문

(재)고양문화재단은「2022 마을단위 문화거점」사업을 운영합니다.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은 시민들이 가까운 일상 근처에서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생활문화 거점 공간 확보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이에 고양시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칠 역량 있는 기획자들을 모집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2. 5. 30. (월) (재)고양문화재단

구분	주요내용				
공 모 명	2022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				
공모대상	고양시 거주(소재) 및 활동하는 문화기획자, 예술인, 고양시민				
사업기간	2022년 5월 ~ 12월 ※ 선정자 활동기간 : 6월 ~ 11월 (6개월)				
	구분	규모	세부기준	지원금액	
지원내용 및 규모	1단계 (신규 <del>공</del> 간)	4명 (4곳)	- 문화 활동 경험이 2년 미만인 생활문화 공간 - 신규 설립 혹은 활동 예정인 생활문화 공간	최대 500만원	
	2단계 (기 <del>존공</del> 간)	5명 (5곳)	- 2년 이상 생활문화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공간 - 유사 사업 활동 이력이 있는 공간	최대 1,000만원	
	온라인	2명 (2곳)	<ul> <li>자체 온라인 플랫폼(홈페이지, 어플)등을 활용하여</li> <li>고양시민 대상 생활문화 프로젝트 수행</li> <li>기존 온라인 플랫폼(네이버, 카카오, 유튜브)등을 활용하여 고양시민 대상 생활문화 프로젝트 수행</li> </ul>	최대 300만원	
접수방법	지원신청서 및 붙임서류 작성 후 이메일 (silver@artgy.or.kr) 접수				
접수기간	5월 30일 ~ 6월 12일				
접 수 처	이메일 접수 (silver@artgy.or.kr)				
관련문의	고양문화재단 생활예술팀 ( 031-960-0062 / <u>silver@artgy.or.kr</u> )				

# 1. 공모 개요

○ 공 모 명 : 2022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

 $\times$  마을단위 문화거점 : 지역 내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이  $\overline{Next{440s}}$  이루어

지는 모든 공간 (온 • 오프라인)

○ 주 최 : 고양시·고양문화재단·경기도

○ 주 관: 고양문화재단

○ 활동내용 : 고양시를 기반으로 마을단위 문화거점 공간 생성 및 활성화 프로

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일상 속 생활문화의 기

반 마련

○ 활동기간 : 2022. 6. ~ 11.

○ 활동장소 : 고양시 전역

○ 지원규모 : 총 11명

※ 1단계 (4): 신규 거점공간※ 2단계 (5): 기존 거점공간

※ 온라인 (2) :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생활문화 프로젝트

○ 심사방법 : 서류 및 인터뷰 심사

# 2. 신청 개요

# 1. 신청 개요 및 내용

○ 신청기간 : 5월 30일(월) ~ 6월 12일(일) 23:59 까지

○ 신청방법 : 지원신청서 및 붙임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(silver@artgy.or.kr)

○ 제출서류

-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

•파일명 : 마을단위 홍길동 지원신청서

- 기획자 이력서 및 단체 활동내역서 1부

- 기타 붙임문서 각 1부

- 스캔하지 않은 hwp 문서, 스캔 후 pdf 문서 모두 제출

### ○ 신청내용 : 아래 주제 중 진행하고자 하는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

구분	규모	세부기준	지원금액
1단계 (신 <del>규공</del> 간)	4명 (4곳)	- 문화 활동 경험이 2년 미만인 생활문화 공간 - 신규 설립 혹은 활동 예정인 생활문화 공간	최대 500만원
2단계 (기 <del>존공</del> 간)	5명 (5곳)	- 2년 이상 생활문화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공간 - 유사 사업 활동 이력이 있는 공간 ※ 공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 및 고양생활문화센터와 사전 협의 후 고양생활문화센터 이용 기능	최대 1,000만원 ※ 고양생활문화센터를 거점공간으로 지정할 경우 최대 500만원
온라인	2명 (2곳)	- 자체 온라인 플랫폼(홈페이지, 어플)등을 활용하여 고양시민 대상 생활문화 프로젝트 수행 - 기존 온라인 플랫폼(네이버, 카카오, 유튜브)등을 활용하여 고양시민 대상 생활문화 프로젝트 수행	최대 300만원

## ○ 신청자격 : 고양시 거주(소재) 및 활동하는 문화기획자, 예술인, 고양시민

- ※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인 자
- ※ 이력서, 활동내역서 등으로 고양시 기반 활동 증명

## - 지원 제외 및 금지 대상

#### ※ 지원제외 대상
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
-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
- 학교・종교기관・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・운영 단체
- 국-공립(도시-구군립) 문화예술 기관-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
-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, 방송국, 언론사, 학교, 학원 혹은 그 소속 단체
- 대표자・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단체
-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약정된 당해 사업마감일까지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미제출 하는 등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
- 사업비를 목적 외로 시용하거나 혹은 회계처리 불특정 개인 및 단체
- 법령위반 사유로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및 단체
- 성희롱, 성폭력,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

## 2. 기타 참고사항

○ 아래와 같은 사업은 지원하지 않음

#### ※ 지원제외 사업

- 동일사업으로 국고 및 지자체,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
- 정치적, 종교적, 상업적 목적의 사업
-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
-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
- 시설의 건립과 매입, 재건축,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
-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및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
- 참여하는 주민 및 동호회 단체 사례비 지급 행사
- 정치, 종교, 상업적 목적의 사업
- 타 행사의 부대 프로그램 또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행사

### ○ 사업계획 작성 시 참고사항

-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시민들과 교류·협력하여 거점 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기획 지향
- 거점 공간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프로 젝트 기획 지향
-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이 속한 지역 곳곳에 생활문 화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획 지향
- 소외지역에 위치한 공간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진행하는 프로젝트 우대
-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우대

# 3. 공모 및 활동 일정

구분	개수	세부기준
공고 게시	5. 30.(월) ~ 6. 12.(일)	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
신청서 접수	5. 30.(월) ~ 6. 12.(일)	공통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
1차 심사 및 발표	6. 14.(호)	1차 심사 : 서류 심사(결과 재단 홈페이지 공개)
2차 인터뷰 심사	6. 16.(목)	2차 심사 : 인터뷰 및 질의응답 ※ 장소 : 고양생활문화센터 아람마당 - 연습마당
최종발표	6. 20.(월)	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
사업 포기 및 변경	6. 20.(월) ~ 6. 23.(목)	선정 단체 중복 공모 여부 확인 사업 포기 및 변경 신청
오리엔테이션	6. 24.(금) 14:00	최종선정자 필수 참석 ※ 장소 : 고양생활문화센터 아람마당 - 연습마당
사업 진행	6월 ~ 11월	
중간 공유회	9월 中	
<b>결과 공유회</b> 11월 中		
<b>정산 마감</b> 11. 20. (일)		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

# 3. 예산 편성 지침

## ○ 예산편성 기본원칙

- 예산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, 모든 항목은 보조금 운용 지침 및 보조금 집행 지침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책정
- 각 예산별로 구체적인 산<del>출근</del>거를 제시해야 하며 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예산은 책정 불가

### ○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

- 선정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통장을 개설하여 명확하게 관리
-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

#### ※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(체크카드 등) 사용 요령

보조금 전용 결제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,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

## ○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

-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철저한 집행 관리를 해야 함 ※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, 상호명 일치
-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※ 보조금 통장, 회계장부, 지출결의서, 영수증, 채주 등 증빙내역·금액이 상호 일치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-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
  - 보조금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해야 하고,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불가 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
-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
  - 강사료, 인건비,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 (특별) 징수 한 후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
- 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

- 사업비는 정해진 기한 내 필히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, 예금이자, 통장해지이자 등은 반납
- 해당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예산 편성 및 지출 불가
  -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건축·기계 등 시설·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신·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, 공과금등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비 및 연구용역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

#### ※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

- 단체운영 경비 :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구입비, 공과금 등

- 자본적 경비 : 시설비, 시설부대비, 설비비, 수선비, 자산취득비 등

- 현금성 경비 : 이웃돕기 성금, 상금, 진료비 등

- 차량유지관리비 : 수리비, 보험료 등

#### ※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

- 단순유흥업종 : '한국표준산업분류'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,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

- 위생업종 : 이·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- 레저업종 :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당구장, 헬스클럽,

PC방, 스키장 등

사행업종 :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기타업종 : 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점

#### 이 기타

- 현금영수증 발행 및 포인트 적립 불가

### ○ 예산편성표

비 목	세부사항	비고
인건비	기획자 인건비, 출연료, 강사비, 원고료 등	<ul> <li>기획자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20% 이내로 자율 편성 (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)</li> <li>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 후 지급</li> <li>사업소득세 3.3% (금액과 무관하게 적용)</li> <li>기타소득세 8.8% (125,000원 초과 시 적용)</li> </ul>
사업비	재료비, 제작비 등	
홍보비	현수막, 포스터, 배너, 인쇄물 출력비 등	
임차비	공간 임차, 장비 임차 등	
운영비	수수료, 소모품비, 사무용품비 등	•물품 구입 시 비자산성 물품만 구입 가능

# 4. 심사 일정 및 방법

### ○ 심사운영

- 1차 서류심사

·심사기준 : 신청서 오류 및 기준 미달, 실현 가능성 및 목적 부합 여부

- 2차 인터뷰심사

•일 자: 2022년 6월 16일 (목)

·장 소 : 고양생활문화센터 아람마당 – 연습마당

· 심사기준(안)

기준	평가항목	배점	세부내용
사업계획	사업계획 적절성	40	- 사업의 목적이 적절한지 - 고양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기획인지 - 지속가능한 문화거점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- 세부 프로그램이 목적 달성에 정밀한 계획인지 - 계획과 일정의 실현 가능성 - 편파적이지 않고 고르게 분배된 사업대상 - 예산 편성의 합리성
사업수행 적합도	사업수행 능력 적격성	30	- 지원자가 사업의 이해와 기획(운영)능력이 있는지 -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은 적절한지
기대효과	문화활동 기반조성	30	<ul> <li>사업을 통해 지역에 생활문화 기반 조성이 가능한지</li> <li>시민 주도형 생활문화의 형성에 기여하는지</li> <li>사업 종료 후에도 형성된 공간, 공동체가 지속가능한지</li> <li>단위지역 문화발전에 미칠 기대효과 및 기여도</li> </ul>

#### ※ 최근 2년간 사업 실적 기준

- 신청 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행시를 2회 이상 기획, 개최 (행시주최 및 주관·행사명칭 등에 관계없이 생활문화 활성화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됨)
- 기타 신청자가 제시하는 유사 사업 실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된 경우

# 5. 유의사항

#### ○ 선정단체 필수 숙지・이행사항

- 최종 심의결과 결정액은 지원신청액과 상이할 수 있음
-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심의총평 이외의 세부 내용은 공 개하지 않음. (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후 선정 취소)
- 사업 진행 중 주요 변동사항(사업기간, 내용, 예산 등)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고양문화재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
-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중간 공유회, 결과 공유회 필수 참석
-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한 담당자의 요청사항 및 각종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
-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
- 사업 홍보물 및 결과물에 인용되는 저작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처리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선정단체에게 있음
- 본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각종 홍보물, 결과물을 재단에 제출 및 해당 결과 물은 향후 고양문화재단이 수정·보완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
-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서약내용 위반 등 사업 배제 및 취소 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(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) 및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 10조 (보조금 교부조건) 1항에 해당 하는 경우, 교부결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음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 (사전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)에 따라, 교부결정 후에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,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음

# ○ 사업 사후 이행 사항

- 사업 정산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는 고양문화재단이 지정한 날까지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